

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98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07년 1월 23일

발의자 : 조신형 의원 외 7인

1. 주 문

- 대전광역시의회 “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-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추적인 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 및 관련사업의 발굴·추진 등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
-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

지 방 자 치 법

- 제58조 (의안의 발의)**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-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법시행령

- 제20조의3 (특별위원회의 설치)** ①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

- 제7조(특별위원회)**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- 제9조(위원의 선임)** ①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.

찬 성 의 원 명 단

찬 성 의 원	서 명	비 고
권 신 형	권신형	
송 재 용	송재용	
전 니 탕 배	전니탕배	
이 영 세	이영세	
장 문 칠	장문칠	
김 리 훈	김리훈	
김 하 윤	김하윤	
박 영 근	박영근	